

이에 대한 설비는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의 발의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특별회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로 시설에 설비를 마련합니다.

4. 글을 맺으며

앞에서 초중등교육의 문제점과 특수(장애인)교육지원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점에 대하여 대강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특수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1)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2,604여명으로서 (일반학교 재학생 수에 특수교육 요구 아동 출현율 2.71% 대입한 결과 8,343,372의 2.71%=226,104) 특수교육 수혜율은 약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의무를 학부모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개입하여 특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 또한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의 현장에서 거의 방치되어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내의 특수교육 환경을 대폭 변화시켜내야 (물리적 환경 조성,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치, 비장애학생과 학부모, 일반교사들에 대한 배려,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행, 교육내용에 대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불복 조치 등)합니다. 또한 현재의 특수교사의 보조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지위도 동등한 특수교육자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가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특성화된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3)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에서 중요성을 알면서도 유치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턱없이 적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교사가 필요한데 치료교사의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급이 적게 설치되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중등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작업인 직업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직업교사는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혹자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혹자는 이 법을 대체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자고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의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1970년대에 제정되어 장애인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서 '차이'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손 봐야할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특수교육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목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수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쓰여 있는,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법조문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교육·치료·복지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통합된, 공교육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수정·보완·추가되어야할 법률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 추가를 통한 개정보다는 폐지 후, 미래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교육·치료·복지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통합된, 공교육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지정토론 - 5

(초중등교육 분야)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김형일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초 ·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일

I. 발표 내용에 대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은 이 법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법의 제정과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진흥법」은 어느 특정한 대상이 그 위치상 중심에 있거나 법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각 법률 조항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분야의 집단이나 개인이 그 주체와 수혜자일 것이다. 이러한 특수교육과 연관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 제정, 1994년 전문개정, 1997년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최근 이 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발표자는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 개정에 대한 아님,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1. 특수교육진흥법」 각 조항에 대한 선언적 문제점, 특별법으로서의 위상 부재, 2. 초 · 중등학교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취학유예, 통합교육에 따른 통합학급 담임과 지원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의무교육과 순회교육,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위와 호칭, 개별화교육, 학교(급)내 인원 제한, 직업 및 진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치료교육의 문제점,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발표자는 특수교육의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수정, 보완, 추가되어야 할 법률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보다는 장애인의 교육 · 치료 · 복지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통합된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가 제시하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토론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인교육센터」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약하다고 본다. 이미 토론자가 의도하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여러 문제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발표자는 현재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교육센터」와의 차이점으로, 「장애인교육센터」에는 관련 예산 배정과 상근 근무자가 있다는 것,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령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장애인교육센터」는 전생애에 걸쳐 교육적 지원을 하는 한다는 점과 각 종 팀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본 구성과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 교육적 접근 방안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역내 일반 「평생교육센터」와의 연계적 차원에서 발전 방향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그리고

행 · 재정적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애인교육센터」가 「특수교육법」으로 명칭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지만, 명칭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아닌, 이 법의 폐지와 전면적 새로운 법 제정 문제는 결론론적 측면에서 득과 실을 놓고 특정한 집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의견 도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적 개정을 통해 그 차선의 방법을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II. 초 · 중등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특수교육진흥법」 폐지에 대한 발표자의 접근 방법에 이견이 있지만, 발표자의 이 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과 노력에 공감한다. 아울러 발표자가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이외에 토론자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초 · 중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 도입

특수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필요시 수시 개정을 통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수요자의 필요성 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개정 기간 안에 모든 대상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개정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개정할 사안이 발생해도 개정하기 어렵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도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언급은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항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 · 개선과 제4장 보칙 제25조의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들 조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과서 무상 보급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과 절차적 단계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 실무능력 중심의 특수교사 양성 체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의 교사 직전 교육은 현재 사범대학의 관련학과 졸업,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대학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의 이수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졸업장만으로 특수교사로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용교사가 취업을 위한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지면서 대학에서의 수학과정보다는 임용에 일단 붙고 보자는 결과위주의 교사양성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졸업생들이 현장에 임용되었을 때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 몸소 부딪치면서 특수교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양성 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고려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제도의 도입은 예비 특수교사로서 4년 동안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사 자격증에 상응하는 기본능력 인증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많은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에서 미국장애아협회(CEC)의 10가지 수행준거에 따른 하위 영역으로 세분하여 채택하고 있다. 신입특수교사들의 임용과정에 이와 같은 평가체제가 반영된다면, 임용교사나 사립학교 채용 시, 대학 수학

과정의 실무수행 자료(포트폴리오)도 특수교사로서의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에 따른 역할 규명

'치료교육'이란 장애를 교정·경감·보완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교육활동이다. <최근 장애정도가 점차 중도·중복화 되어감에 따라 치료교육교사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 19조(2005. 3. 24, 법률 제7395호), 2항에서는 이전에 특수학교에 만 배치되었던 치료교육담당교원을 특수학급에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치료교육교사의 배치에 대한 규정만 있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의 한 방안으로 치료교육교사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치료 관련 세부 전문영역을 교육적으로 통합, 조정, 교정의 역할을 주로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성의 취약 부분은 각 치료교육교사의 세부 주 전공을 하나씩 이수하여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부터 세부 전공을 심도 있게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이미 배치된 치료교육교사는 세부 전문 영역 별 장기적인 연수를 통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환교육과 연계한 초·중등교육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아동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학교교육은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전의 졸업 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니라 초등부 저학년에서부터 능력 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진단과 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이에 따른 장애아동의 각 전환시기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되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담긴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의 작성 조항이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조항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전환교육과 연계된 초·중등 특수교육은 지금까지의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취학이전과 졸업 이후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III. 맺으며

발표자의 아들이 입학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한 교실 안에 담임교사를 돕기 위해 보조로 들어간 아내와 장애아들, 그리고 어린 막내가 쪽 앓아 있는 모습을 상상 해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개정하려고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우리 나라 특수교육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개정되길 희망한다.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 서로 같은데, 가려고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종합발표

(종합)

“장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도경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도경만

1. 서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30여년의 시간동안 특수교육이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노력했던 장애인들은, 공교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현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에 맞서서 개개인의 노력이나 부모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빈번한 차별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장애아동들은 단위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다양한 차별과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여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 부족과 인식의 부재로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강화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틀 속에서 장애인교육에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수많은 요구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논리로 재단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외국의 법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 '과거에 비하여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또는 '2만불 시대애나 장애인의 교육권보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구체적인 현장의 교육차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들의 결과로 교육의 질은 고사하더라도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수혜율은 6%로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교육수혜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내용 역시 통합교육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과정에서의 제약들은 장애 학생 개개인이 감수해야 될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고, 실제로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의 장애인교육의 현실이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산의 부재와 인식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장애인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으로서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총론 및 각 항목들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 특수교육대상자와 의무교육·무상교육

특수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1조(목적)에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를 9가지 장애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규정된 장애영역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동법 제2조 정의 2항에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주를 장애로 국한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과 정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접근하고, 특수교육이라는 고유한 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견 맞는 듯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의무교육 및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 심각한 교육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바라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 자체로 인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과 그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 장애영역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기본법(제18조 특수교육)과 초·중등교육법 (제7절 55조-59조)에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특수교육진흥법에 미루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정의)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모두 특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함으로써 장애인 중 실제로 선정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여 실제로 선정된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무상·의무교육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조항에 특수교육진흥법 제 5조 무상·의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직권에 의한 선정절차 마련의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기 위한 책임을 특수교육대상자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항은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강구)의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외에 구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역할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장애유아의 교육수혜율은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해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지금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당사자나 보호자에게만 맡기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총칙부분에 명시된 정의 및 무상교육·의무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선정된 자로 한정지어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를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만 신청의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직권에 의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과교육, 복지지원을 분리하여 각각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영역들에 대한 용어도 재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로 인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교육권의 확대와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 및 치료교육적 지원도 공교육의 영역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을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를 총 11가지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②항에는 ①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항에는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예산확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국가는 ①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 8조 "(조기특수교육시책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제시하여 놓았다.

위의 법 조항만을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들을 큰 항목별로 적시해 놓았고 이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해 놓았기에 필자 역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위의 조항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이 아닌 '임무'이며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제3조의 조항은 '진흥'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촉진'하기 위한 문구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법 조항 내용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뿐이다.

구체적 실행으로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조에 조기특수교육시책이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를 가진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는 무상 공교육으로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성과 강제력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선정하며, 이들에

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문제 등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은 수박겉핥기식 이상의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장애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후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장애인교육을 바르게 세우는 길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임에도 이는 현실의 예산 논리 앞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예산 부족의 논리는 법률에서 강제조항이 미비하다는 것 이외에도 정부기관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제4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특수교육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정부 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특수교육의 문제들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지만, 각 정부부처 간의 예산확보 논쟁에 밀려 특수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예산을 고민하는 성격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협조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일부분 확보하는 협의체의 역할로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들을 추상적으로 총칙부분에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와 6조, 7조, 8조 등과 같은 조항들에서도 각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과 내용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협의체의 성격보다는 한시적인 범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제 3조(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의 1(시·도위원회 회의등) 제4조의 2(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장·단기 특수교육발전계획,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로 명시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기구의 역할로서 규정되어 있어, 그 위상이 서로 다르고 역할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법안에 명시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이 마련되면서, 단위 학교 내에서 진행되었던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선정/배치 업무가 각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발생해 왔던 초·중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차별 사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의 각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회의 역시 연간 2~3회 정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에 규정된 '기타'의 역할을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10여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배치과정이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사후 결재하는 식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배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내에서 장

애학생 입학과 관련한 끊임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전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각 기구의 역할을 전문화시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장애교육지원위원회'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각각 변경해,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장애학생까지도 포함하여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교육지원위원회의 경우,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해 장애인당사자 및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교육의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선정, 배치 및 구체적 교육내용 등에 관한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장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시·군·구 장애교육지원위원회 산하에 두어 전체 장애교육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교육 전달의 마지막 체계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장애교육지원센터의 개념,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장애교육지원센터**

개념과 대상

- 장애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교육의 질을 제고함.
-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함

구성과 역할

○ 구성과 기능

: 시·군·구 교육청(장애교육지원위원회)별로 설치하고 전담 인력 배치, 당사자의 참여 보장

- 진단·평가지원팀

1. 특수교육교사가 담당
2. 진단·평가지원체제 구축(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부모 및 보호자, 치료교육 교사, 재활의학 전공의사, 변호사, 일반학교 교장·교감 등)
3. 진단 평가 관련 업무

- 치료교육지원팀

1. 치료교육교사가 담당
2. 치료교육 요구 아동 치료교육지원
3. 치료교육요구에 대한 지원내용 결정(치료교육교사와 치료사 배치 및 치료(교육)지원 영역, 프로그램 공동 작성)

- 전환교육지원팀

1. 직업교사 담당
2. 장애인고용주, 직업재활기관팀장, 복지관 직업재활팀장, 학부모, 특수학교(급) 교장 등으로 팀구성
3. 직업교육, 지역사회내 현장실습장(전환학급) 운영
4. 직업재활 관련 업무

- 지역사회통합지원팀

1.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사 담당
2. 일반학교 인식개선 지원
3.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검토 및 지원 내용 결정 협의체 구성

1. 전담 인력과 진단·평가지원팀, 치료교육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지역사회통합지원팀, 학부모, 해당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각계 전문가로 구성,
2.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 결정(치료교육, 직업교육, 다양한 유형의 보조원배치, 전환교육, 지역사회 통합,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등)

○ 역할

1. 장애실태 조사 및 관리, 진단 평가
2.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 결정(협의체 구성)
3. 교육상담 실시, 홈페이지 운영
4. 직업훈련기관 및 지원고용 업체 연결
5.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6. 장애인 치료교육 지원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

○ 시설 및 설비

: 열린우리당 정봉주위원이 국회에 발의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특별회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센터 당 50억 이상을 투입하여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함

4) 통합교육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통합교육의 고무적 발전을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항목은 통합교육이 활성화되는데 주요한 '자극제'로 작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법적 정의가 방법적인 면에만 치우쳐 정의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인권으로서 보장되고, 사회통합의 한 유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

야 할 이념이자 철학임에도 현실은 그 지원 방법에만 매몰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 지원 방법이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데, 법률상에서 그것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현행 통합교육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일반교육기관으로의 '공간적인 장소 이동'만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목적 역시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이 학교 구성원이 되어 개별 장애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전반적인 교육적 욕구를 가장 적합하게 충족시키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교육지원의 내용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우리의 통합교육 현실은 특수학교에서 실시되는 통합과 특수학급의 통합 등, 분리교육체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교육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별도로 지원해야 할 교육방법 중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지원 조항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철학과 그 방법 등,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여전히 특수교육의 틀 내에서만 규정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장애인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국민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교육은 방법이 아닌 인권으로써 하나의 가치지향으로써 장애 영·유아기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의 기본 입법(법안 개정)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이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 내용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교육 지원 내용이 장애학생의 권리로서 명시되어야 한다.(편의시설, 보조인력, 특수교사, 치료교사, 직업교사, 교육매체 등)

셋째, 특수학급 시간제/전일제, 순회교육 등 현재의 통합교육의 방법을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협력교수, 학습도움실)이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방법을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5) 개별화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9조(개별화교육 운영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별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개별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교육 지원 방법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 상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각각의 장애학생에 대해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업현장에서 구현할 수 없다.

특수교육진흥법 상에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학교별로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의 학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특수교사 1인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과정 역시, 아동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평가를 통해 마련하기로 되어 있지만, 관련 교사 및 보조인력, 부모와의 협력체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 자료를 마련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별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에서부터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작성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형식적 서면이 아닌

실제 당사자가 참석한 구두회의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화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교사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학급당 인원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6) 복지 지원

장애를 지닌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보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 제 12조(취학편의 등), 동법 제 13조(차별의 금지 등) ②항, 동법 제 15조 ③항 등에서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과 일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학버스 보조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보조적 지원(복지지원)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시된 조항들 역시 특수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것마저도 지극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이것이 지역사회와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편의시설 설치 등 복지지원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선한 활동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지원하는 것이나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프린터, 확대기 등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학생의 활동에 꼭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도 제한적인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것마저도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동의를 써주어야만 배치가 된다.

복지지원의 경우, 이미 미국 등에서는 '관련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연방정부의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원하는 복지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관련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취학편의라는 단편적인 개념으로 그 지원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규정이 존재하나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또는 그 거부 조치,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취학편의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통학버스 운행 등의 취학편의를 학교의 장 등이 거부했을 경우에 이 거부조치에 관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관련해 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 등은 이에 대해 학교장 또는 시군구 교육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보내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압박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의 금지등)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거부나 입학거부에 한하여 벌칙조항이 존재할 뿐이므로 입학거부 등의 조치에 한해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일정부분 강제해 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들에 대한 구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지원의 내용들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장애인교육지원법상으로는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에 대한 불복, 필요한 경우 소송제기를 통해 법원에 대한 불복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원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고 그에 대한 구체수단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때에만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내용들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수화통역과 속기사를,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역보조나 점자도서를, 지체장애학생에게는 활동보조인을, 중증 정신지체나 발달장애학생에게는 활동보조인과 학습보조인 등의 보조 인력과 장애 영역에 맞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필수적으로 법 조항에 명시하고, 이런 조치들을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가 이러한 지원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장애학생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공하는 직권에 의한 조사 및 제공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 역시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7) 이의신청과 절차상의 보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당사자 및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26조(재심청구) ①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규정된 두 가지의 사항이다. 두 가지 사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그 이후의 학교의 지정·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및 보호자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재심 청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현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며, 위의 두 가지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임이 틀림없다.

한편 또다른 조항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사립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이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게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교육기관의 변경을 당사자 및 부모가 교육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그러나 이러한 조항 역시 특수교육기관의 부족과 열악한 통합교육 현실 앞에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고 난 후에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차별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공 거부, 수화통역 또는 문자통역 제공 거부, 치료교육 제공 거부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국 IDEA(P.L. 108-446, 미국의 장애인교육법(2004년도 개정안))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IDEA상에서는 교육내용상 중요한 다양한 사항들에 관하여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그 이후 행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가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내용에 관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미국은,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의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상 제공되어야 할 교육권 보장 조치에 관한 판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많은 사례들에서 장애학생이나 그 부모 등은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 왔던 것이다.

또한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만 특수교육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장애학생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감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등 자기표현이 힘든 중증의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서 발

생하는 구조적인 차별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문제를 장애당사자 및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호자가 참여하거나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자의 참여를 명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의신청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진술을 위한 조항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항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이나 기타 중요한 교육지원 또는 그 거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기구(장애교육지원위원회, 그래도 불복하는 경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 특성과 정도 및 학교 교육환경에 따른 복지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복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 하였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별해소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 앞서와 같은 불복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주요 과제

1) 조기교육 - 장애 영·유아교육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아기의 장애조기발견, 조기선정, 조기지원 체제의 수립에는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유아기의 무상의무교육과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확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생애주기에 따른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법률 자체가 강제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기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장애교육지원법"의 틀 속에서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장애교육지원법"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영·유아 관련 조항은 크게 "장애영아(0세~2세)의 조기중재 및 무상지원", "장애유아(3세~5세)의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장애영아의 경우,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선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와 장애고위험 영아를 선별할 수 있는 발달검사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또는 장애고위험 영아로 선별된 장애영아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소는 '영아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영아와 부모에게 치료적 복지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아발달지원센터에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장애 또는 장애고위험 영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영아와 부모에 대한 치료적, 복지적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유아의 경우 장애영아에 대한 치료적, 복지적 지원 이외에 교육적 지원을 추가해 장애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왜곡된 방식의 의무교육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애유아의 취원 유무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받아야 할 장애유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의 취원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립 유치원을 대폭 증설하고, 관련 복지 및 치료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저조한 장애유아의 교육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유아를 위한 사설조기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고, 장애유아의 교육 수혜율이 6%에 머물고 있는 등 장애유아의 공교육적 교육 환경은 거의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시기의 치료·복지·교육적 지원은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유아특수교육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과 치료적/복지적 지원으로 일부 아동의 경우 지능이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신체·인지·언어·심리사회적 측면·자조 등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수적인 장애조건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고, 장애아동의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애영아의 경우 관련 부처간 협의 하에 무상의무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장애유아의 경우 무상지원의 원칙하에, 교육적/치료적/복지적 지원을 의무화시켜 내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비되고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무상교육의 틀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장애유아 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무상·의무교육의 신청을 부모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고지해야 한다.

셋째, 장애유아교육의 시작에서부터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유아의 교육 뿐만이 아니라 장애유아의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유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치료(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교육교사/치료사의 합리적인 배치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에 복지관, 시설교육기관, 보육시설들이 부재한 농어촌 지역의 장애유아를 위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현재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 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아동이 더욱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합교육을 잘 받고 있기에 지원이 없어도 되는 아동들로 분류하여 애써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

<표-1> 2003~2004년도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³⁵⁾ (단위 : 명)

과정별	연령	연도	학 령 인구수	추정장애 학생 수	특수학교(급) 교육대상 장애학생수*	특수교육 수혜 장애학생수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수**	추정유예 장애학생수	특수교육 수혜율
유치원***	3~5세	2003	2,000,955	30,814	11,941	1,789	8,445	1,707	14.9%
		2004	2,000,955	30,814	11,941	2,677	8,445	819	22.4%
초등학교	6~11세	2003	4,089,429	110,632	42,870	29,964	6,777	6,129	69.9%
		2004	4,089,429	110,632	42,870	30,336	6,777	5,757	70.8%
중 학교	12~14세	2003	1,819,655	49,230	19,077	10,685	5,665	2,727	56.0%
		2004	1,819,655	49,230	19,077	11,326	5,665	2,086	59.4%
고등학교	15~17세	2003	2,047,594	55,385	21,461	8,622	9,770	3,069	40.2%
		2004	2,047,594	55,385	21,461	10,203	9,770	1,488	47.5%
계	3~17세	2003	9,957,633	246,061	95,349	51,060	30,657	13,632	53.5%
		2004	9,957,633	246,061	95,349	54,542	30,657	10,150	57.2%

자료출처 : 2004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특수학교(급) 교육대상 장애학생수는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여 일반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장애학생인 일반교육 가능 장애학생 수를 제외한 수임

** 일반학교 통합 장애학생 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수

*** 유치원 과정 장애학생 수는 장애학생 출현율 2.71%에서 학습장애 출현율 1.17%를 제외한 수

<표-2> 특수교육요구아동 추정수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자 수혜율 (2004년 기준)³⁶⁾

구 분	일반학교 재학생 수	특수교육요구 아동 추정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수혜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3세 - 5세	1,832,890	49,671	1,278	400	999	2,677	3.9%
초등학교	4,116,195	111,549	9,222	20,162	945	30,329	27%
중 학교	1,933,543	52,399	6,000	5,037	289	11,326	22%
고등학교	1,746,560	47,331	7,262	2,403	1,377	11,042	18%
계	9,629,188	260,950	23,762	28,002	3,610	55,374	17.7%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추계, 교육통계연보,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등 종합 정리

<표-1>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3년과 2004년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수혜율 자료이다. <표-2>는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에 근거한 실제 특수교육수혜율을 제시한 자료이다. 그런데 두 가지 자료 모두 현재의 특수교육수혜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만을 두고 봤을 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교육수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는 실제 2001년 "특수교육요구아동출현율조사"연구보고서(아래 <표-3> 참조)를 왜곡하여 특수교육수혜율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35) 참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장애학생 학교별 재학 분포에 관한 표본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장애를 가졌더라도 일반학교 교육 환경에 아무런 제약없이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전체 장애학생의 61%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추정 학생 수는 전체 장애학생 수 (장애학생 출현율을 2.71%로 추정해서, 학령기 아동을 이 비율로 곱한 수) 중 일반학교 환경 내에서 적응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를 뺀 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6) 특수교육대상자 추정 수=일반학교 재학생 수×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2.71)/100
만 3세-5세의 경우 유치원재학생과 어린이집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산재되어 있기에 전체아동수로 명기함.

<표-3> 장애범주별 특수교육요구아동 교육배치 장면

장애범주 \ 교육배치장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기 타	합계
시각장애	68.12	4.13	21.56	6.19	100.00
청각장애	47.26	14.54	28.50	9.70	100.00
정신지체	45.97	25.25	23.76	5.02	100.00
지체부자유	41.80	10.62	13.11	34.47	100.00
정서·행동장애	67.28	21.65	5.54	5.53	100.00
자폐성 발달장애	38.16	28.68	16.40	16.76	100.00
언어장애	77.03	9.98	1.58	11.41	100.00
중복장애	0.00	0.00	37.21	62.79	100.00
건강장애	71.82	1.00	0.25	26.93	100.00
학습장애	77.07	22.93	0.00	0.00	100.00
합계	61.25	21.78	10.43	6.54	100.00

자료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요구아동출현율 조사연구, 2001.

이는 "특수교육요구아동출현율조사"에서 언급한 아무런 지원없이 방치되어 있는 61.2%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요구아동을 별다른 지원 없이도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분류하여 배제해 버리고 나머지 38.8%의 아동으로만 "특수학교(급) 교육대상 장애학생수"라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특수교육수혜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수혜율 계산 방법은 궁극적으로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 수혜율을 무려 25% 이상 높이는 결과(실제 통계 17.7%, 교육인적자원부 통계 57.2%)를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 <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요구아동추정치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수혜율은 17.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혜율을 의도적으로 높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수혜율 현황 자료에서조차도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수혜율은 69.9%, 중학교는 5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교육수혜율 97.7%와 중학교 교육수혜율 91.9%에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통계상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요구아동출현율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아무런 교육적 지원 없이 방치된 장애아동(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로 하면 30,657명,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자료로 한다면 61.25% 약 150,000여명)에게 특수교육적 지원(또는 관련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교육적 지원이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 법률 조항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교 환경의 정비와 일반교원들의 장애아동교육에 있어서 책무성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불균형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증설/정비해야 한다.

셋째, 초, 중, 고등학교 연령과 장애정도(발달장애,정신지체,중도중복장애등)에 맞는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치료교육과 직업교육 등의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통합교육 현장에 맞는 교사 자격 및 교사 배치기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학급당 학생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12명까지의 1학급 학생수는 너무나 과도한 숫자이며 실제 개별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개념으로 초등 5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6명으로 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재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고정화된 특수학급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도움실, 협력교수등의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법률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고등교육

장애인의 고등교육 확대를 위하여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되어 감각장애중심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체장애인 박지주씨의 소송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 등의 지원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의 과정과 학교생활의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법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특별전형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대학 입학 일반전형 및 장애인 특별전형 이외의 다양한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수험편의 등의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장애학생이 일반전형 및 장애인 특별전형 이외의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형식화된 장애인 평가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평가시에 원칙적으로 장애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객관적인 수학능력만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학교생활(자립생활이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의 교육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에서 "장애학생도우미"를 무급 자원봉사형태로 도입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권 문제를 다 댄질하려는 행태를 개선하여, 원칙적으

로 유급 근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장애유형별 다양성 및 같은 장애영역 내에서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어느 한 장애영역에 치우쳐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에 집중되어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장애학생 당사자의 참여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필요는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서 당사자는 보호자가 아닌 해당 장애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적 판단 능력이 낮은 정신지체, 자폐, 발달장애 등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등의 보호자가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원칙들 속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각 대학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무화가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인 대학생의 수업/복지/장학/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통해 각 영역별 장애학생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원들을 마련해야 한다. 각 장애영역별로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시각적 정보에의 접근권', '시설에의 독립적 접근권' 등이 그 핵심 사항이고,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수화통역권 또는 문자통역 형태의 의사소통권'이 핵심 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이동권, 시설접근권, 활동보조인 제도' 등이 그 핵심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기 장애의 경우 '강의록 제공 내지 강의노트 제공 서비스, 시험 시의 시간연장' 등도 필요한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4) 평생교육

최근 평생교육의 개념이 장애인계에서도 도입되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통과되어(1999년 제정),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들이 법적 조항에 기반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의 내용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중첩되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평생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해교육(한글, 셈하기 등 성인기초교육), 자기개발교육(여가교육, 정보화교육, 스포츠 등), 시민교육(교양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문해교육의 경우, 현재까지는 민간에서 설립된 장애인야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자기개발교육 및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에 기반해 그 내용이 수립되고, 관련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심도 있게 조사하지 못해 왔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내용을 일반인의 평생교육의 내용을 원용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생교육의 내용을 장애

인의 특성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내용 등을 재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개발해 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내용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해교육, 자기개발교육, 시민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단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또는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적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협력 체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법률의 조항과 정책의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력 또는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5) 직업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와 특수교육진흥법 제22조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이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들 모두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만큼 현재의 직업교육의 수준은 법률로써 제대로 강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직업담당교사의 자격 기준과 배치 조항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법 조항에서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장애학생의 직업재활 업무와는 거리가 먼 교사가 직업담당교사로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직업 획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원 배치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직업교사 확보율이 미진한 상태이며,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급에는 배치조차 되지 않고 있기에 중등과정 특수학급에서 직업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복지관 내의 직업재활시설, 일반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직업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진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과 역시 노동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원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공과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으로 직

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전공과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수 년간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명기한 자격기준을 장애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 시각, 청각장애학교 : 직업교육이 특정 직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직종에 맞는 기술계 전문 인력을 직업담당교사로 정한다.

-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 직업재활이 직종훈련이 아니듯이 직업평가,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별화된 직업 배치, 지속적인 사후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재활을 전공한 직업담당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으로 한정하여 직업교육이 직종훈련의 개념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교사배치기준과는 별도로 직업교사의 배치 기준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직업담당교사의 배치기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이 없는데 특수학교(급)은 6개 학급당 1명, 전공과는 1학급당 1명의 직업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사회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어느 영역보다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은 고등부 이후 성인사회의 전환 관점에서 봐도 지역내 관련기관(촉진공단, 사업체, 지자체, 복지관)과의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일정 재정지원을 배정 받아 직업평가, 작업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현장실습, 사후지도 등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나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속으로 다가갈 수 없는 접근성의 제한이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고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학령기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시간제, 반일제, 전일제 작업경험제공)은 의무적이어야 함이 모든 직업교육의 선결과제 일 것이다.

다섯째, 현재 일부 특수학교에 존재하는 전공과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전공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중복장애)인 경우 학생들의 장애가 점차 중증화되기 때문에 정해진 직종중심 직업교육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인 직업훈련 대신 지역사회와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이나 지원고용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역사회내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전공과의 설치장소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도 정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2005년 4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은 '장애인'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교육법이란 명칭은 특수교육의 개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교육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기능적, 사회적 제한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답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이 특수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된다는 논리로 "특수교육"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특수교육은 장애인교육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며 장애를 대상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특수교육과 장애인교육의 포함관계는 역전된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교육의 (물론 핵심적인) 부분이지 그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육은 그 내용상 특수교육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복지지원 그리고 직업교육까지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개념규정도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IDEA는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맨 첫 번째로 장애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의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교육이나 고용,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가 강조된다. 즉 특수교육은 관련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개념이고, 이 양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은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이다. 이것은 정의규정(Sec. 602. Definitions)(9)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IDEA가 적용되는 장애학생의 정의(Child with a Disability)에서도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Sec. 602. Definitions)(3)(A)).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의규정(Sec. 602. Definitions(26))과 특수교육에 관한 정의규정(Sec. 602. Definitions(29))을 보면 양자가 어떻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상위개념으로 잡고, 이 적절한 교육내용 속에 특수교육과 복지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IDEA법상의 장애인 교육 지원 체계와 일치한다. 미국의 IDEA의 체계를 살펴봤을 때,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현재의 특수교육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거나, 특수교육진흥법의 법리적 체계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정부와 일부 특수교육학계의 지적은 옳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결국 "특수교육진흥법"의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이나, 아니면 "장애인교육지원법" 이냐라는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앞서 제기하였던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특수교육진흥법"의 수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수혜율을 높이고, 특수교육과 복지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과 원칙 등을 근거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총론 부문)

구분	장애인교육지원법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교육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
무상의무교육	장애유아에서 고등학교과정까지의 무상의무교육체제 확립
교육지원내용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 장애인당사자대표, 장애학부모, 행정기관대표 등이 참여 정책과 제도 수립 및 갈등 중재 시·군·구 단위(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 산하)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운영 · 장애유아에서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종합 지원
통합교육	장애유아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으로서 규정 협력교수, 학습도움실, 특수학급(시간제, 전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지원팀(특수교사, 치료교사, 직업교사, 보조인력, 통합교사, 학부모 등)을 구성해 개별화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구현
복지지원	보조인력(활동보조, 학습보조, 수화통역, 속기사, 점역보조, 생활지도원 등)의 다양화, 제도화. 장애영역별 다양한 교육매체 지원
이의신청 및 절차상보호	개별화교육계획수립에서의 참여 및 불복 절차 마련, 다양한 복지지원 요구 및 불복 절차 마련,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 요구 및 불복 절차 마련

<표-5>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생애주기별 지원 부문)

구분	장애인교육지원법 포함되어야할 내용
장애영아지원	장애영아 조기발견/조기선별 시스템 마련(발달검사도구 마련, 영아발달 지원센터 설치), 선정된 장애영아에 대한 치료, 복지, 교육적 지원
장애유아교육	무상의무교육체제 마련 -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지, 통합교육 지원체제 마련
초·중등교육	통합교육지원체제 마련, 과도한 학급당인원수 하향조정, 장애학생교육에 대한 일반교원 책무성 부여,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체제 마련
고등교육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교수학습과정에 접근권, 보조인력 및 편의제공 의무화
평생교육	장애성인 문해교육(성인기초교육) 지원, 자기개발교육지원(정보화교육, 여가교육, 기타), 자립생활 역량강화 교육 지원, 기존의 특수교육기관과의 직업교육(진로교육) 및 전공과와 연계된 직업교육 지원, 시민성 교육 지원.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배치 또는 부서 설치
직업교육	장애영역별 직업교사 자격기준 정립, 직업교사 배치기준 정립,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실시, 전공과의 성격 및 운영주체 재정립 및 전공과의 장소 범위 확대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교육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산의 부재로 떠넘겨 왔고, 선진국의 국민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의 경우, 2만 달러 시대에 가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전에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1978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1975년에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제정되어, 통합교육과 무상의무교육체제를 만들었다. 프랑스 역시 1979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었으나, 장애인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부모의 참여 권리를 보장했다. 영국은 1987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었지만, 1981년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통합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가 있는 아동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국민소득 14,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교육예산 수준은 OECD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교육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그만큼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 목표와 전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교육은 언제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을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율성과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예산 지원의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배움의 욕구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집단들이 기존의 장애인 교육의 지원 체제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 1

(종합)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지정토론 - 1”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지정토론 - 1

박지연(이화여자대학교)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서 발표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연구결과물, 학술대회, 연수,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특수교육 및 관련분야의 학자,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자료에서 지적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들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던 장애학생이 중등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면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거나, 고등부 교육을 마친 장애인이 다시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등에 대한 법령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리라는 기대 속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교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바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의 명칭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의 여부를 떠나)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방향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입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민단체, 국회, 행정부 모두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고쳐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모색에 지혜를 모으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종합안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화 할 때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 수립

법조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한 법조문들의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의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IDEA의 6대 원칙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제금지(zero reject), 비차별적 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 적절한 교육(appropriate education),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의 6개 원칙만으로도 우리는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 추구하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이 의미하는 기본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 원리에 따라

어떤 세부사항이 입법화 되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관련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먼저 마련했으면 합니다.

2. 장애 및 장애유형에 대한 정비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가에 따라 장애인 교육의 대상은 한없이 확대될 수도 있고 엄격하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의 유형만을 제시하고 시행령 별표('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서 각 장애의 정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거듭 강조된 바와 같이 많은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선정'된 장애인만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조문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장애의 정의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서 언급된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실현되려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된 현재의 체계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를 비롯하여 장애영유아에게 적절한 장애범주가 추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³⁷⁾

또한 정서장애에의 포함여부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자폐성장애, 교통사고나 학교폭력의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간 많이 연구되지 못했던 농맹장애(deaf-blindness) 등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이 기회에 함께 그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 당사자와 가족의 결정권에 대한 고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성원들은 많은 경우 수동적으로 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야 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매우 강조한 이번 발제였습니다만,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언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특수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모가 미리 정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든지, 장애학생이 자신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회의에 참석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회의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의견과 선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7) 미국의 경우 (a) 인지발달, 신체발달, 말과 언어발달, 심리사회적발달, 자조기술발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달영역에서의 지체를 가졌거나, (b) 이러한 발달지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어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가 필요한 영유아(20 U.S.C. 1432(5))로 명시함으로써 발달지체영유아는 물론 발달지체 위험(at-risk)영유아가 지를 Part C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4. 용어에 대한 쟁점들

(1)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최근 유아특수교육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을 '관리해야(manage) 할 하나의 사례(case)'로 보지 말자는 뜻에서 최근에는 '사례관리자'대신 '가족서비스조정자(family service coordinator)'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가족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을 하는(self-determined) 독립적 단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들이 조화롭게 제공되도록 조정하는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 감을 보여주는 용어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서비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쓸 수는 없더라도 '사례관리자'보다는 좀 더 가족중심적인 용어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2) 장애인교육 vs. 특수교육

오늘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특수교육 관련 법안의 이름을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할 것이냐, 특수교육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장애인교육과 특수교육의 어느 한 편이 다른 쪽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지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육' 또는 '특수교육'의 정의 또는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교육' 안에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다면, '장애인교육법'이 더욱 폭넓고 적절한 법률의 명칭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및 관련서비스)'을 단순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special needs population)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특수교육법'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위험(예: 정서장애 범주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행동장애, 학습장애나 정신지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닌 학생들, 빈곤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등을 포함한 매우 넓은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의 명칭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교육진흥법의 '진흥'은 이제 불필요한 수식이 된 것 같아서, 특수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명칭은 특수교육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시하는 장애인교육법 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입법이라는 것이 당장의 상황 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여 실제로 선정된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 자료의 내용도 추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신청자의 99.6%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특수교육을 원하는데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는 어떤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특수교육을 신청한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장애가 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특수교육 관련자들의 숙제였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이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시작으로 이 논의를 계속 정교화, 구체화하고 다양한 특수교육 핵심관련자(stakeholders)들의 의견을 모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이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토론 - 2

(종합)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지정토론 - 2”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1.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

○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그 이후도 마찬가지)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악한 장애인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은 낮은 특수교육수혜율, 높은 취학유예율, 열악한 교육환경, 질낮은 교육지원체계 등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존재한다.

○ 하지만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나고 사회가 민주화되어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예산배정과 논의의 제일 앞자리에 서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2004년에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시행예산과 관련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교육예산은 기존의 예산배분에서 약간의 증감만을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 정책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다. 작년보다 몇퍼센트를 증가했느냐가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보니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는 뒤로 밀리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증액하는 예산이 열악한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정봉주의원이 특단의 방책으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겠는가?)

○ 현 교육부의 장애인교육정책의 문제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의지(알맹이)가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은 헌법에 따라 장애인도 일반 학생과 균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1조에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 맞게 특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다. 앞서 발표된 발제자(초중등교육분야)는 다음과 같이 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특수교육진흥법을 읽다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강제성을 띤 조항은 앞에서 언급한 제28조와 제28조의2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여야 한다.’로 도배되다시피 하여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교육의 책임을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작년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국회교육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특수교육진흥법 현장적용 실태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 진흥법의 문제와 한계로 ①특수교육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며, ②법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부실하고, ③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며, ④특수교육 및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용역 보고서(특수교육 행·재정적지원실태분석, 2004)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를 성격의 불명확성(예, 명칭과 적용범위), 초중등 교육법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예,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통상적인 법률 내용과의 괴리 또는 내용적 부적절성(자격기준과 배치기준), 우리나라 실정과의 부적합성(예, 개별화교육계획과 그 운영위원회)등을 지적하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특수교육의 양적인 면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 매우 많다. 법률에 규정된 목적이 제대로 행재정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은 법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3. 특수교육의 개선 과제

○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장애 아동들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학교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야 하며 특수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등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자료,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확대 등 특수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러닝 체제구축, 멀티미디어 자습서 등 특수교육정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교육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 교원양성 대학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과목을 필수이수토록 하고 모든교사가 통합교육 능력을 갖도록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원격연수기관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특수교육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인원배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배치하여 특수교육 정책수립 및 교육현장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확대, 종일반 운영, 초중등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교실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관련 논의와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하겠다.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부, 2004)

4. 특수교육진흥법 개선 방안

○ 발제자의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선의 특수교사들과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 등 의미있는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현 특수교육진흥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법체제 하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권은 다음의 네가지이다. ①장애영유아에서 초중등교육까지의 무상의무교육, ② 통합교육 ③생애주기별 교육 ④교육,치료,복지서비스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원체계. (특수교육진흥법 현장적용실태,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재적 한계로인해 법의 전면개정으로는 현재의 장애인교육의 행정 및 재정구조의 전폭적인 개선을 이뤄내기 어렵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특수교육수혜율 10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체제와 행정,재정체제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의 유지 존속에 집착하지 말고 장애인교육권완전 확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법 제정과 정책마련 등 가능한 방안을 완전히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고로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이 이뤄졌던 1994년 당시 법률개정에 참여했던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는 명칭을 주장했으며 그 당시에도 장애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을 요구했었다.

5. 맺음말

○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고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법률조항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부분적인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교육권연대의 주장에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테고 그 부분을 탄탄하게 채워가야 한다.

○ 장애인에게 교육권은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장애의 조기발견, 치료 및 교육서비스,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 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 장애인 교육수혜율 100%와 높은 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일은 쉬울 수 있으나 이를 일궈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하며 세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강제할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 뜻있는 국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걸림돌과 장벽을 제거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이 요구된다.

○ 민주노동당은 올바른 정책과 법제도 마련을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앞장서고 민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종합토론 - 3

(종합)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지정토론 - 3”

이유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이유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

I. 들어가는 말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선과제에 대한 발표내용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현안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해 주고 있다. 장애인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이러한 현안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특수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행정도 전체 교육행정의 일부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 국민의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때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감당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내용을 숙독하면서 계속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행정은 현실이라는 사실과, 이 훌륭한 제안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여 실제화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을 토대와 나무와 벽돌을 모을 수 없다면, 결국 이야기만 하다 지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이미 10년을 경과하였고, 그간의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이유들도 대부분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특수교육 수혜율의 차이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에 차별이 있으며, 교육 서비스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표방하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미흡한 면이 너무나 많으며,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그 개선책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자는데 대해 토론자의 견해를 첨언하고자 한다.

II.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장애학생 교육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여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은 여러 차례 부분 개정과 한 차례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계는 일대 지각 변동을 겪었다. 그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명시
- 통합교육의 개념 규정과 실천
- 개별화 교육계획의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
- 직업교육, 부모교육, 치료교육 제도화

그러나 앞서 발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와 학계, 장애인계 등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로 인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있어 일부 조문은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며, 실천적이기보다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면이 있다. 즉, 중요한 사항들은 법에 느슨하게 명시한 후 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하게 해 두었다는 것이다.

III.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비판적 대안

발표자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총론 부분의 8가지 과제와 생애주기별 지원 부문(현재 해당 교육관련 법률들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조차 없는)의 6가지 과제 등 총 14가지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의 부분 개정이나 전면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전격 폐지하고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이상의 14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몇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

럼 비교적 상세하게 제안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계의 논리적 입장도 청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을 폐기하고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의 문제이다.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는 IDEA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장애범주에 드는 '장애인으로 진단'됨과 동시에 '특수교육 요구'가 있다는 것이 함께 증명되어야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적격성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성 여부와 지원대상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IDEA SEC. 602. DEFINITIONS

(3) CHILD WITH A DISABILITY-

(A) IN GENERAL- The term 'child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i) with mental retardation, hearing impairments (including deafness),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s, visual impairments (including blindness),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referred to in this title as 'emotional disturbance'), orthopedic impairments, autism, traumatic brain injury, other health impairments, 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and

(ii)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다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 가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적, 교수적, 행동적 수정이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 차별의 문제는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게 근거하여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발표자가 제안한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행정조직상 부처간 협조체제를 이루거나 조정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부 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맡겨진 장애인 교육을 주체적으로 수행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보다 더 고립된 법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힘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식의 공유가 있거나 모든 부처와 부서를 통괄·조정할 수 있는, 현재의 특수교육정책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부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는 법률구제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기한 과제들을 담아낼 수 있는 법률체계를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역제안하여 공론화 하고자 한다.

첫째, <표4>의 총론 부문, 다시 말해 현행 법률이 안고 있는 당연히 실천해야 할 과제들은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은 법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둘째, <표5>의 생애주기별 지원 부문, 다시 말해 현행 교육관련 제 법률들의 내용은 분석하여, 각 관련 조항들을 수정, 보완, 신설(고등교육)하여 개정하도록 하며,

셋째, 헌법 이하 여러 법령에 산재한 장애인교육 관련 법령들을 구조화하여 집대성한 '장애인교육관련법령집'을 제작 배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①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강력한 실천
- ② 교육관련 제 법률의 개정 → 각 부처별, 각 부서별 장애인 교육업무의 책무성 강화 및 통합교육 촉진
- ③ 장애인교육관련법령집 제작 → 장애인교육 관련 행정가, 장애인 및 관련자의 법적 지식과 권리 피해 최소화

IV. 제안 내용에 따른 법률 개정

이상의 제안에 따른 현행 장애인 교육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교육관련 제 법률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진흥법

- ① 용어의 정의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기관, 기타
- ② 교육대상과 판별 : 대상의 범위, 진단 및 판별체계, 기타
- ③ 교육기회 보장 : 의무교육, 무상교육
- ④ 교육방법 : 개별화교육
- ⑤ 관련 서비스 : 방과 후 프로그램, 치료교육, 직업교육, 기타
- ⑥ 장애인교육 정책 심의 및 권리구제 기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⑦ 장애인교육 지원 기구 : 교내 장애학생 지원 부서,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타
- ⑧ 교육보상 :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지원인력 및 보상기자재, 기타
- ⑨ 입학 및 전입학 : 차별금지, 편의제공, 기타
- ⑩ 특수교육 현황 및 정책 보고 의무 : 각종 연간지표의 국제비교 포함
- ⑪ 학교평가
- ⑫ 장애인 교육 보장 연한 : 장애 발견에서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단, 전공과는 선택) 졸업까지
- ⑬ 제반 이슈 해결 : 법률의 명칭, 법률 개폐 여부, 법률 적용의 범위, 법률의 위상(타 법률에 우선 여부)

2. 장애인 교육 관련 제 법률의 검토 및 분석

- ①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등
 - 국민으로서 장애인교육권 보장
- ② 초·중등교육법 :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전공과의 설치), 제57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보장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등의 자격
 - 특수교육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등의 개념 재정립
 - 학력 인정
 -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 시책 제시

- ③ 고등교육법 : 제6조(학교규칙),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 장애학생지원규정 및 지원 담당부서 혹은 지원센터 설치 의무
 - 장애인 캠퍼스 이동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과 정보접근 편의시설 설치의무
 - 입학전형대상자의 선발기준 명시
- ④ 평생교육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평생교육사, 제4장 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여건 조성
 - 성인 장애인의 문해교육 및 야학
- ⑤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 장애인교육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위상과 적용 범위 : 이념적 기반 혹은 실천적 기반
 - 장애인교육의 질적 토대인 '진단·평가→치료(→재활) 및 교육 → 취업(보호)'에 따른 부처간 협력의 근거 제시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하여 치료교육교사 양성
- 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접근권)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설치기준)
 - 목적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을 별도로 강조해야 함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에서 교육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
 - 학교내 이동과 수업 접근권 보장을 통한 통합교육의 실제적 기반 보장
- ⑦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 노동부부설 장애인 실업고등학교 설립 : 경도 발달장애청소년의 기능인력 배출
 - 직업교육교사 양성 지원

V. 맺는 말

우리부에서는 현재 '특수교육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이후 새롭게 대두된 이론은 물론 국제적 입법 동향 및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현행 특수교육 관련 법령들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소중한 정보들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다소 거칠긴 하지만 거듭된 논의와 공론의 장을 거친다면 현장의 요구와 정책간의 거리를 충분히 조절하고 마침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부록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 법률 제0674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1.1.29>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1997.12.13>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취학편의등) ①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1.1.29>

③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 (순회교육등)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2.12.5>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5>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치료교육등)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①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중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24조 (장학금지급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개정 1997.12.13>) ①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중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1.1.29>

②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③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재심청구) ①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0.1.28>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716호, 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40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본다.

③(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6217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2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42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8.7.1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7.16>]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8.7.16, 1998.8.26, 2001.1.29, 2001.12.19>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2001.1.29>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19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7.16>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7.16>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성격진단·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8.7.16>

②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8.7.16>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8.7.16>

제4조의2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의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7.16]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 학교장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8.7.16>

③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7.16>

제10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및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④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⑤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8.7.16>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8.7.16>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 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삭제 <2001.12.19> [본조신설 1998.7.16]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7.16>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1호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12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12.31>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중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19조 (교과용도서)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9>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7.16>

제20조 (재심청구) ①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95호,1994.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칙 <제15837호,1998.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정책심의회규정) <제15871호,199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생략

②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중앙교육심의회규정"을 "교육정책심의회규정"으로, "중앙교육심의회"를 "교육정책심의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2항제6호,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152>생략

부칙 <제17426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부령 제007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8.8.8>]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교정 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교정 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 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1998.8.8>

3. 중학교졸업증서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의 도구는 별표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교정 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 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19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등)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8.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19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 등에 이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개정 1998.8.8>)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파견교육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 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치료교육과목의 교원자격외에 치료교육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장애의 영역과 치료교육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학교교원 등의 자질향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13조 (재심청구 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부칙 <제660호,199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199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41>생략